

● **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590호**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·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1일

산업통상부장관

< 상세기준(개정) >

분과	코드 번호	코드명	기준 내용
냉동기· 특정설비 분과	AC113	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	개정
	AC114	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	개정
	AC116	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재검사 기준	개정
	AA319	고압가스용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·재검사 기준	개정
	AA916	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제조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	개정
고압가스 제조·충전 및 가스도매 사업 합동분과	GC202	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	개정
	GC203	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	개정
	GC204	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기준	개정

※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(cyber.kgs.or.kr/kgscodex.do)을
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(☎ 044-203-5182) 또는
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(☎043-750-1320, 132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상세기준 제·개정안 주요내용 >

구분	주요내용	비고
냉동기 ·특정설비 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세기준 작성지침에 따른 용어정비(AC113, AC114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상세기준 작성 등에 관한 세부지침 지침」 등에 따라 ‘콕크’를 ‘콕’으로, ‘커피링’을 ‘커플링’으로 수정 ○ 경계표시 검사방법 조항번호 및 저장탱크 재검사기준 부록 내 인용조항 오류 정비(AC113, AC116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탱크 등 보호조치 기준에서 경계표시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함에 따라 일부 코드번호 조정 및 재검사기준 부록 내 검사항목 표의 인용 조항 번호 수정 ○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프로텍터 설치목적 및 보호대상 명확화(AC114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프로텍터 설치 대상을 부속장치로 명확히 하고, 탱크 외면 수평 투영면 이내에 설치된 부속장치는 프로텍터 설치 대상에서 제외 ○ 안전밸브의 표시사항 명확화(AA319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설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단위와 일치하도록 ‘최대유량’을 ‘분출량’으로 용어를 변경하고, 분출량의 단위에 ‘kg/h’를 추가 - 표시사항 시인성 제고를 위해 합격표시(각인) 크기 기준(3mm × 5mm)을 고려하여 안전밸브 분출량 표시사항 문자의 최소 높이를 3mm로 규정 - KS 및 ASME 등 국내·외 기준 및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내용을 반영하여 표시사항에 ‘설정압력’과 ‘제조번호’를 추가 ○ 소형저장탱크용 안전밸브의 분출량 산정방법 신설(AA319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밸브 제조업체가 분출량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소형저장탱크용 안전밸브 분출량 산정방법(부록 B) 기준 마련 ○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제조기준 경과조치 법령 부합화(AA916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의 경과조치 기준에 따라 노광장비 상세기준 경과조치 기준 수정 	AC113 AC114 AC116 AA319 AA916 총 5종
고압가스 제조·충전 및 가스도매 사업 합동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기방식 조치대상 및 전위측정용 터미널(T/B) 설치 위치 등 명확화(GC20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저 및 해저터널에 설치하는 고압·도시가스 시설의 전기방식 조치 대상과 전위측정용 터미널(T/B)의 설치 위치 및 방법 규정 ○ 해수로 채운 해저터널 내 설치된 배관의 내진설계 대상 명확화(GC20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수는 배관 변위를 억제하지 못하므로 해수로 채운 해저터널 내 설치된 배관을 지상 배관과 동일하게 내진설계 적용 대상으로 규정 ○ 모르타르 재료로 채운 해저터널 내 설치된 배관 내진설계 대상 명확화(GC204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르타르 재료로 채운 해저터널 내 설치 배관의 변위는 콘크리트에 의해 완전히 억제되므로 지하 매설 배관과 동일하게 내진설계 적용 대상으로 규정 	GC202 GC203 GC204 총 3종